

『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개정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, 현행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,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,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“환경훼손” 용어 추가(안 제4조)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“환경기본계획”을 “환경보전계획”으로 변경(안 제11조)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 의거 “지역 환경기준의 설정”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삭제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변경(안 제18조)
-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거 “보상금”을 “포상금”으로 변경(안 제18조)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“조정위원회”를 “환경정책위원회”로 변경 및 구성, 기능, 임기, 직무, 회의, 시책반영, 위원수당 등 조항 추가(안 제20조~제27조)
- 「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」에 따라 “행정정보 공개심의회”를 “정보공개심의회”로 변경(안 제28조)
-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“환경조사 결과 공표”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의거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문구 삭제(안 제30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환경교육진흥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
「지방자치법」, 「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」
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- 기타 협의 승인 내용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은,
 -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
「지방재정법」(’14.11.29 시행)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은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“환경훼손” 용어 추가 및 “환경기본계획”을 “환경보전계획”으로 변경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 의거 “지역 환경기준의 설정”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삭제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변경
-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거 “보상금”을 “포상금”으로 변경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“조정위원회”를 “환경정책위원회”로 변경 및 조항 추가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일부 용어 정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,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을 반영 및 『지방재정법』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하여,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